DREAM LINE

드림라인(주)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 5가길 16 아카데미타워 3층 우)07071 TEL)070-8011-0281 FAX)843-3432 담당: 권오귀

문서번호 : 드림-2018-07311 발신일자 : 2018-05-25

수 신 : 서울특별시도시기반본부장,현대건설 대표이사

참 조 : 방재시설부장,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 1공구현장소장

제 목 : 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 시행구간 신당보도육교 신설에 따른 통신설비 이설비용 납부 요청

1.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관련근거

가.제물포01-2018-165(2018.04.17)"드림라인 통신관로 이설(신당보도육교 공사구간) 요청의 건"

나.방재시설부-5411(2018.04.25)"지장물(KT,드림라인) 이설요청(서울제물포터널)"

다.드림-2018-06333(2018.05.08)"[원인자공사]강서구 신월동 신당보도육교 신설에 따른 통신설비 이설비용 청구"

라.제물포01-2018-214(2018.05.23)"드림라인 통신관로 이설 요청의 건"

마.판례-대법원,2013.11.14.2012다60275 통신설비사용방해 및 철거금지

바.판례-대법원,2017.6.19.2016다278616 부당이득금(지방자치단체)

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2013.03.23)

아.전기통신사업법 제79조"(전기통신설비의 보호)"

자.전기통신사업법 제80조"(설비의 이전 등)"

차.전기통신사업법 제94조"(벌칙)"

3.위 공사 관련하여 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1공구 신당보도육교 공사구간내 당사(드림라인) 정보통신 시설물(기간망)과 저촉되어 이설이 불가피한 부분은 위 2번항 관련근거로 원인자측에서 원인자 부담금(이설비용)을 당사에 납부하여 조속히 전기통신 설비가 안전하게 이설 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또한 드림라인 전기통신설비는 관련근거 "사"항의 내용과 비교해도 점용시기(1999.5월)가 다르며 귀사에서 주장하는 서울제물포터널 실시계획승인 고시(2016.09.17)와 관련성이 없으며,이는 공사변경에 따른 공사구간내 드림라인 전기통신설비의 보호에 준하는 적법한 요구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5.기타사항

-해당구간 내 우리회사의 시설물은 기간통신 망으로서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임의 훼손이 금지되어 있음을 알려 드리며, 설비파손시 민,형사상의 책임과 피해보상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지장물 이설공사에 필요한 사항은 우리회사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관련근거 1부. 끝.

드림라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창

통신설비사용방해및철거금지

[대법원 2013.11.14, 선고, 2012다60275, 판결]

【판시사항】

기간통신사업자인 甲 주식회사 등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임차한 전주들 사이에 각종 통신선을 가설하여 초고속 인터넷 등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통신선의 가설·이용에 관하여 乙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는데, 乙 지방자치단체가 지상의 전선 및 각종 통신선로를 지중화하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甲 회사 등에 협조를 요청한 사안에서, 乙 지방자치단체가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 제3항에 따라 이설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구 전기통신사업법(2010. 3. 22. 법률 제101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3항(현행 제80조 제3항 참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씨앤앰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현 담당변호사 윤기원 외 1인)

【피고, 상고인】

남양주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건흥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6. 21. 선고 2012나44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은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① 기간통신사업자인 원고들은 통신선 가설을 위하여 남양주시 금곡동, 평내동 일대 도로변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전주를 설치·소유하고 있

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주를 임차한 다음, 그 전주들 사이에 각종 통신선(이하 '이 사건 통신선'이라 한다)을 가설하여 초고속 인터넷, 유선방송 등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 사건 통신선을 가설·이용함에 있어 피고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실, ② 피고는 2008년부터 도로변에 산재하여 있는 전주로 인한 도시미관의 저해 및 안전사고 발생 예방 등 효율적인 도로관리를 위하여 지상의 전선 및 각종 통신선로를 지중화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원고들에게도 그 사업 시행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 ③ 이에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통신선의 지중화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지중화사업을 시행하여 통신설비 이전의 원인을 제공한 피고가 구 전기통신사업법(2010. 3. 22. 법률 제101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3항에 따라 이설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중화사업의 법적 성격이나 도로점용허가 또는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비용부담의 주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부당이득금

[대법원 2017.6.19, 선고, 2016다278616, 판결]

【판시사항】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의 규정 취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시미관의 개선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전주와 가공전선로의 지중화사업을 진행하면서,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전주에 설치된 통신선의 지중이설을 요구하여 기간통신사업자가 이설공사를 한 경우,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 제3항에 따라 이설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지방자치단체)

【판결요지】

구 전기통신사업법(2010. 3. 22. 법률 제101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기통신사업법'이라고 한다) 제51조는, 토지 등의 이용목적 또는 이용방법의 변경으로 전기통신설비가 토지 등의 이용에 방해가 되는 때에 토지 등의 소유자나 점유자의 요구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설비의 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그 원인을 제공한 자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이다. 즉, 기간통신사업자가 기존에 설치된 전기통신설비를 이전하는 등으로 토지의 소유자나 점유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의무를 지는 대신 이에 대한 보상으로 이전비용 등을 원인제공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다만 전기사업법 제72조의2가 2011. 3. 30. 법률 제10500호로 신설됨에 따라 현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전기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선로설비를 포함하여 전주(電柱)에 설치된 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을 요청한 경우에는, 요청을 한 자가 원칙적으로 이설비용을 부담하되 전선로를 설치한 자도 위 조항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다]. 지방자치단체가 도시미관의 개선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전주와 가공전선로의 지중화사업을 진행하면서,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전주에 설치된 통신선의 지중이설을 요구하여 기간통신사업자가 이설공사를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원인을 제공한 자로서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 제3항에 따라 이설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참조조문】

구 전기통신사업법(2010. 3. 22. 법률 제101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현행 제80조 참조), 전기사업법 제72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다60275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씨제이헬로비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권오상 외 3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제이피 담당변호사 임재철 외 3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6. 11. 24. 선고 2016나506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가.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토지 등의 이용목적 또는 이용방법의 변경으로 인하여 그 설비가 토지 등의 이용에 방해가 되는 때에는 그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설비의 이전 그 밖에 방해의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구 전기통신사업법(2010. 3. 22. 법률 제101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기통신사업법'이라고 한다) 제51조 제1항(현행법도 내용이 동일하고 표현만 바꾸었다)]. 위와 같은 요구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는 해당 조치가 업무의 수행상 또는 기술상 곤란한 경우가 아니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같은 조 제2항), 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설비의 설치 이후에 그 설비의 이전이나 그 밖에 방해 제거에 필요한 조치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담한다(같은 조 제3항 본문).

위 규정은, 토지 등의 이용목적 또는 이용방법의 변경으로 전기통신설비가 토지 등의 이용에 방해가 되는 때에 토지 등의 소유자나 점유자의 요구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설비의 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그 원인을 제공한 자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이다. 즉, 기간통신사업자가 기존에 설치된 전기통신설비를 이전하는 등으로 토지의 소유자나 점유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의무를 지는 대신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 이전비용 등을 원인제공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다만 전기사업법 제72조의2가 2011. 3. 30. 법률 제10500호로 신설됨에 따라 현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전기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선로설비를 포함하여 전주(電柱)에 설치된 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을 요청한 경우에는, 요청을 한 자가 원칙적으로 이설비용을 부담하되 전선로를 설치한 자도 위 조항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다].

지방자치단체가 도시미관의 개선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전주와 가공전선로의 지중화사업을 진행하면서,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전주에 설치된 통신선의 지중이설을 요구하여 기간통신사업자가 이설공사를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원인을 제공한 자로서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 제3항에 따라 이설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다6027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원고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서울 양천구 신월로 일대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전주와 전선을 설치·소유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주를 임차하여 별도로 통신선과 케이블선을 설치해 초고속 인터넷, 유선방송 등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였다. ② 피고는 2008년부터 구민을 중심으로 신월로를 통합 디자인하는 '신월로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공사' 사업을 진행하였고, 위 조성사업의 일부로서 이 사건 도로 620㎡ 부분에 설치된 전주, 전선, 통신선 등을 지중화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③ 원고는 2009. 7.경 피고의 요청을 받아 이 사건 도로에 있는 전주에 설치된 통신선과 케이블선(이하 '이 사건 통신선'이라고 한다)을 지중으로 이설하는 공사를 하였고, 이에 따른 공사비를 지출하였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통신선 지중이설 공사에 원인을 제공한 자로서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 제3항 본문에서 비용부담의 주체로 정한 설비의 이전 등 필요한 조치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지중화사업의 주체로서 이 사건 통신선의 지중이설을 요구한 피고가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 제3항 본문에서 말하는 원인제공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로서 피고와 체결한 별도의 협약에 따라 그 소유의 전주와 가공전선로를 지중으로 이설하였을 뿐이므로, 원고의 통신선 지중이설에 원인을 제공한 자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구 전기통신사업법상 비용부담의 주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원심은, 원고가 한국전력공사와 이 사건 통신선을 지중으로 이설하는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와 한국전력공사가 체결한 협정이 원고가 지중이설 비용을 지출·부담하는 법률상 원인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원심판결 이유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구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피고가 부담해야 할 지중이설 비용을 자신이 부담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지출한 지중이설 비용에 관하여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 증명책임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권순일 김재형(주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5. "관계인"이란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따른 권리 또는 그 밖에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다만,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기존의 권리를 승계한 자를 제외하고는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12조 (장해물 제거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9조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를 할 때 장해물을 제거하거나 토지를 파는 행위(이하 "장해물 제거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및 점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소유자 및 점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사업시행자(특별자치도, 시·군 또는 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장해물 제거등을 할 수 있으며, 특별자치도, 시·군 또는 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허가 없이 장해물 제거등을 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장해물 제거등을 하려면 미리 그 소유자 및 점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장해물 제거등을 하려는 자는 장해물 제거등을 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그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장해물 제거등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제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 (토지등의 보전)

①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는 누구든지 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형질의 변경이나 제3조제2호 또는 제4호에 규정된 물건을 손괴하거나 수거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②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 고시된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공작물(工作物)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附加)·증치(增置)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리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2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증치를 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해당 건축물·공작물 또는 물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80조 (설비의 이전 등)

①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토지등이나 이에 인접한 토지등의 이용목적이나 이용방법이 변경되어 그 설비가 토지등의 이용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그 토지등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설비의 이전이나 그 밖에 방해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경우 해당 조치를 하는 것이 업무의 수행상 또는 기술상 곤란한 경우가 아니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설비의 설치 이후에 그 설비의 이전이나 그 밖에 방해 제거에 필요한 조치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담한다. 다만, 기간통신사업자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나 점유자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를 설치할 때 보상금액, 설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그 토지등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1. 기간통신사업자가 해당 전기통신설비의 이전이나 그 밖에 방해요소를 없애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
2. 해당 전기통신설비의 이전이나 그 밖에 방해요소 제거가 다른 전기통신설비에 유익하게 되는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기통신설비의 이전이나 그 밖에 방해요소 제거를 요구하는 경우
4. 사유지 내의 전기통신설비가 해당 토지등을 이용하는 데에 크게 지장을 주어 이전하는 경우

□ 도로법

제90조 (부대공사의 비용)

① 부대공사의 비용은 부대공사를 실시하기 위한 도로에 대한 도로점용허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07조에 따라 도로관리청과 협의하거나 도로관리청의 승인을 받고 도로점용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부대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범위에서 이 법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8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도로관리청(제112조에 따라 고속국도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와 민자도로 관리자를 포함한다)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도로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③ 부대공사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그 비용에 관하여는 제91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91조 (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① 도로관리청은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도로공사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도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제37조에 따라 도로공사를 하거나 도로의 유지·관리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은 그 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비용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92조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로공사 등의 비용)

① 제36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로공사를 시행하거나 도로의 유지·관리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은 해당 도로공사의 시행자나 도로의 유지·관리 행위자가 부담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 또는 도로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중 일반국도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그 밖의 도로에 관한 도로공사 또는 도로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전기통신보호법

제79조 (전기통신설비의 보호) 벌칙

① 누구든지 전기통신설비를 파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기통신설비에 물건을 접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기능에 장해를 주어 전기통신의 소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전기통신설비에 물건을 던지거나 이에 동물·배 또는 옛목 따위를 매는 등의 방법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오손(汚損)하거나 전기통신설비의 측량표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기간통신사업자는 해저(海底)에 설치한 통신용 케이블과 그 부속설비(이하 "해저케이블"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저케이블 경계구역의 지정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정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해저케이블 경계구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⑤ 해저케이블 경계구역의 지정 신청, 지정·고시의 방법과 절차, 경계구역 표시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벌칙

제94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한 자
2.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의 일부 취소를 위반하여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한 자
3. 제7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설비를 파손하거나 전기통신설비에 물건을 접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기능에 장해를 주어 전기통신의 소통을 방해한 자
4. 제8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직 중에 통신에 관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자
5. 제83조제3항을 위반하여 통신자료제공을 한 자 및 그 제공을 받은 자